
IV. 주요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및 특징

1.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현황 및 특징

가. 미국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IRA가 도입 및 개발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IRA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노후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이동 시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 이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IRA를 제공하는 SEP IRA¹²⁾, SIMPLE IRA¹³⁾, Roth IRA¹⁴⁾제도 등 다양한 IRA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말 현재 IRA 적립금 규모는 약 4조 2천억 달러로 전체 은퇴 자산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며, 은퇴자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RA를 소유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전통형 IRA의 비중은 31.2%이지만 자산 보유액 기준(2009년 말 기준)으로 IRA 총 적립 자산 4조 2,300억 달러 중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RA 적립금의 대부분이 전통형 IRA이라 할 수 있다. 이

12)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는 기업이 IRA의 보험료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각출 수준을 매년 조정 가능하다.

13)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는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의 노·사 쌍방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각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14) Roth IRA는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William V. Roth, Jr.의 이름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통형 IRA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활용하며,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 운용 시 및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 5년 경과 시 비과세)한다.

에 반해 SEP IRA와 SAR-SEP IRA¹⁵⁾에 포함된 자산은 2,350억 달러로 총 IRA 자산의 6%에 불과하며, Roth IRA에 포함되는 자산규모는 2,150억 달러로 총 IRA 자산의 5%, SIMPLE IRA에 포함된 자산은 580억 달러로 총 IRA 자산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IV-1〉 IRA 형태별 자산 규모 및 비중

(단위: 10억 달러, %)

연도	전통형 IRA		SEP/SAR-SEP IRA		Roth IRA		SIMPLE IRA		전체
	자산 규모	비중	자산 규모	비중	자산 규모	비중	자산 규모	비중	
1998	1,974	92	115	5	57	3	4	<0.5	2,150
1999	2,423	91	143	5	76	3	9	<0.5	2,651
2000	2,407	91	134	5	78	3	10	<0.5	2,629
2001	2,395	92	131	5	79	3	14	1	2,619
2002	2,322	91	117	5	78	3	16	1	2,533
2003	2,719	90	145	5	106	4	23	1	2,993
2004	2,957	89	169	5	140	4	34	1	3,300
2005	3,259	88	191	5	160	4	42	1	3,652
2006	3,722	88	236	6	196	5	52	1	4,206
2007	4,223	88	266	6	233	5	63	1	4,785
2008	3,167	88	193	5	173	5	46	1	3,579
2009	3,722	88	235	6	215	5	58	1	4,230

자료: ICI(2010, 5).

IRA 자산에서 사용자 보조를 통해 축적되는 자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EP IRA, SAR-SEP IRA, SIMPLE IRA의 비중만을 고려하는 경우 IRA 자산 축적에 사용자의 기여도는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에서 IRA로 전환되는 금액을 고려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의해 축

15) SAR-SEP IRA는 사용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IRA에 적립하는 제도였는데 25명 이하의 영세사업자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6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에 의해 신규가입은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SAR-SEP IRA에 가입되어 있는 적립금은 유지될 수 있다.

적되는 IRA의 자산은 상당하다.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SEP IRA, SAR-SEP IRA, SIMPLE IRA의 자산은 2,930억 달러로 총 IRA 자산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지만 IRA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형 IRA의 경우 상당한 액수가 매년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401(k)과 같은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에서 유입되고 있다.

〈표 IV-2〉 전통형 IRA의 자산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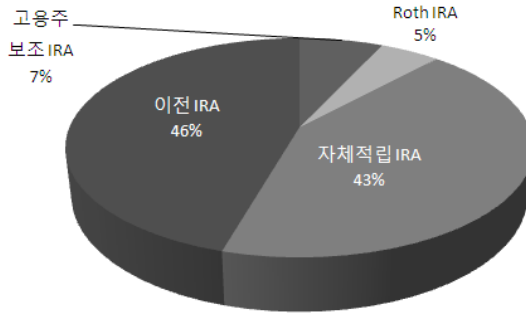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

연도	자체 적립 (Contribution)	이전* (Roll Over)	인출 (Withdrawal)	총 자산	뮤추얼 펀드 금액
1996	14.1	114.0	45.5	N/A	557
1997	15.0	121.5	55.2	1,642	728
1998	11.9	160.0	74.1	1,974	881
1999	10.3	199.9	87.1	2,423	1,130
2000	10.0	225.6	99.0	2,395	1,103
2001	9.2	187.8	94.3	2,322	1,035
2002	12.4	204.4	88.2	2,719	912
2003	12.3	205.0	88.3	2,917	1,146
2004	12.6	214.9	101.7	2,957	1,304
2005	13.6	246.5	112.3	3,259	1,448
2006	14.4	282.1	124.7	3,722	1,719
2007	14.4	323.2	148.0	4,223	1,944
2008	N/A	N/A	N/A	3,167	1,351
2009	N/A	N/A	N/A	3,722	1,648

주: *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에서의 이전을 의미함.
 자료: ICI(2010, 5).

IRA 전체 자산을 사용자 보조가 포함된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는 경우 사용자 보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1〉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IRA과 다른 퇴직연금에서 이전되는 자산이 근로자가 축적하는 자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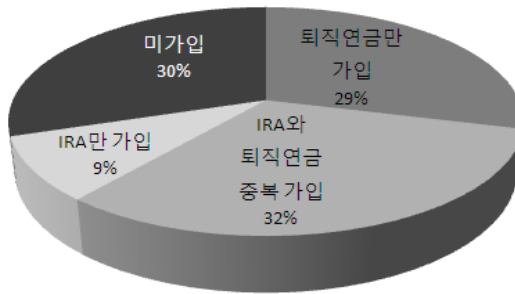
〈그림 IV-1〉 사용자 보조 여부별 IRA 자산 비율



자료: ICI(2010. 5).

미국 전체 가계의 70% 정도가 퇴직연금(DB형/DC형 IRA)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가계의 41%가 1개 이상의 IRA 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IRA 가입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IRA 제도가 존재하며 가입요건에 대한 제약이 적고 퇴직연금과 IRA 제도에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IV-2〉 미국 가계의 IRA 가입 현황



자료: ICI(2009. 1).

즉, 현재 미국의 4,730만 가계가 1개 이상의 IRA에 가입하고 있으며, 제도 유형별로는 전통형 IRA의 가입 비중이 높고, Roth IRA, 기업형 IRA 순으로 가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 미국 IRA 유형별 가입자 추이

(단위: 백만 가구, %)

연도	IRA 전체1	전통형 IRA	Roth IRA	기업형 IRA
2000	38.0 [35.7]	30.5 (28.7)	9.8 (9.2)	7.2 (6.8)
2002	38.0 [34.8]	30.8 (28.2)	11.8 (10.8)	8.4 (7.7)
2004	40.9 [36.5]	33.2 (29.6)	13.0 (11.6)	9.0 (8.0)
2006	43.8 [38.3]	36.3 (31.7)	15.3 (13.4)	8.8 (7.7)
2007	46.2 [39.8]	37.7 (32.5)	17.3 (14.9)	9.2 (7.9)
2008	47.3 [40.5]	37.5 (32.1)	18.6 (15.9)	10.0 (8.6)

주: 1) 1개 이상의 IRA에 가입한 미국 가계 수임.

2) [] 복수응답을 포함한 비중, () 안은 비중임.

자료: ICI.

2009년 5월 말 기준으로 10가구 중 4가구는 노후자산을 적립하는 제도로 IRA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가구 수는 4,61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구의 31.2%에 해당하는 3,660만 가구는 1974년 ERISA법에 의해 도입된 전통형 IRA를 가입하고 있으며, 총 가구의 14.5%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는 1998년 Taxpayer Relief Act에 의해 도입된 Roth IRA¹⁶⁾를 가입하고 있다. 총 가구의 8.2%에 해당하는 약 960만 가구는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SEP IRA, SAR-SEP IRA, SIMPLE IRA에 가입하고 있다.

〈표 IV-4〉 IRA 종류별 소유 인구 수 및 가구 비중

(단위: 백만 가구, %)

종류	소유 가구 수	비중
전통형 IRA	36.6	31.2
SEP IRA	9.6	8.2
SAR-SEP IRA		
SIMPLE IRA		
Roth IRA	17.0	14.5
총 IRA	46.1 ¹⁾	39.3

주: 1) 일부 가구는 한 가지 이상의 IRA를 소유하고 있음.

자료: ICI(2010, 5).

16) Taxpayer Relief Act는 1997년에 마련되었으며, Roth IRA는 1998년에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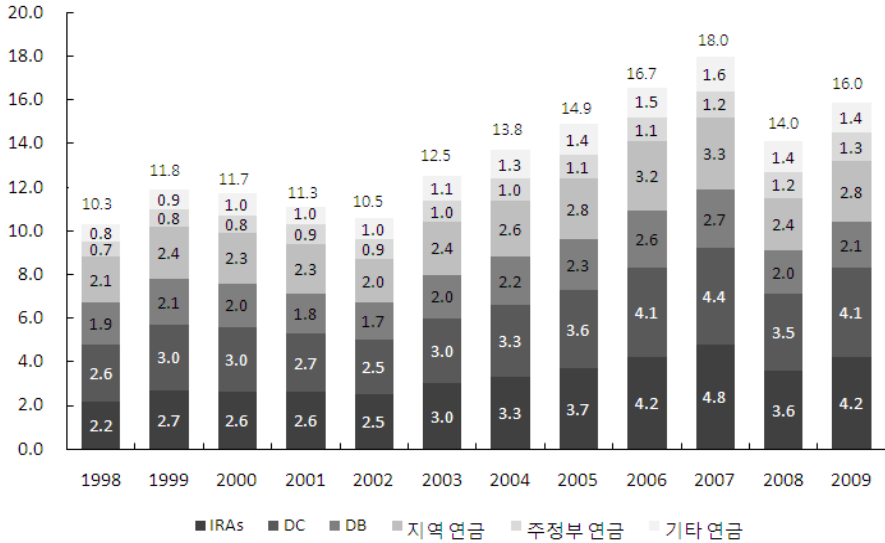
이처럼 개인저축과 공적연금 이외에 사용자 보조 및 세금혜택이 제공되는 IRA, DC, 및 DB형 퇴직연금을 노후자산 축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퇴와 관련한 시장은 2009년에 비해 14% 증가한 16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IRA는 2009년 한 해 동안 18%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자산운용 부분의 수익성 증대 등으로 가능하였다.

IRA는 퇴직연금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은퇴자산 중에서도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9년 말 현재 미국의 총 은퇴자산 중 IRA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에 이르고 있으며, 퇴직연금시장에서 40.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IRA는 DC와 더불어 미국의 은퇴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

IRA는 퇴직연금이 부재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퇴직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직 및 퇴직 시 은퇴자산 축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특히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기퇴직과 잦은 이직이 발생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및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이전 근무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의 적립자산을 IRA로 전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가계들이 한해 이전 근무지에서 적립한 퇴직연금 자산을 IRA로 이전시킨 금액이 2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일반 IRA 전체 가입자의 59%인 약 2,200만 이상의 가계들이(2007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을 IRA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3〉 미국의 은퇴자산시장의 종류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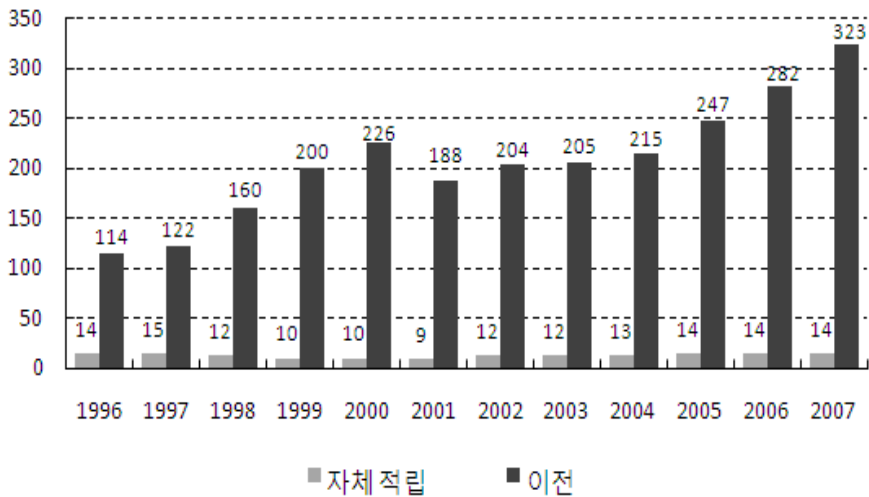
(단위: 조 달러)



주: 기타 연금에는 확정 및 변액연금 등이 포함됨.
 자료: ICI(2010, 5).

〈그림 IV-4〉 IRA 자산의 자체적립 및 이전 금액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0, 5).

〈그림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A가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IRA 자체적립보다 기타 퇴직연금자산에서의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3,230억 달러가 다른 퇴직연금에서 이전한 금액인 반면 자체적립 금액은 140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을 IRA로 전환한 가입자 가운데 86%는 적립금 전액을 IRA로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적립금 이전은 IRA 성장을 견인하였다. 전통형 IRA에 가입한 미국 근로자들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의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8%는 은퇴 후 노후소득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정자문전문가(Professional Financial Advisor)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명 중 1명은 신문 등을 활용하고, 30%는 친구나 가족과 상의해서, 17%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은퇴자금과 자산관리 계획을 수입하며, 자신이 직접 투자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IV-5〉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통형 IRA로의 전환(2007년 기준)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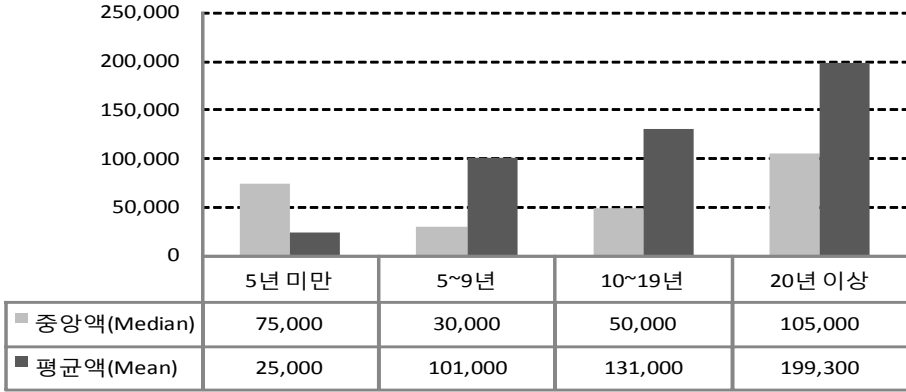
퇴직연금의 IRA로의 전환	비중(%)	평균 적립액 (Mean)	중간적립액 (Median)
IRA로 이전함	59	147,800	61,000
IRA로 이전한적 없음	41	96,800	30,000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이전		86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이전		14	

자료: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전통형 IRA 가입자를 대상으로 IRA 적립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IRA를 가능하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A 적립금액은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최대한 IRA를 보유하겠다는 인식이 IRA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 보유기간에 따른 IRA 적립금 규모

(단위: 달러)



자료: ICI(2008, 1).

이처럼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IRA 가입자들은 IRA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여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IRA에 적립된 자산의 중도 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통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81%가 중도인출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여(2006년 기준, ICI) 대부분의 IRA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시점까지 IRA를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 중도인출을 한 IRA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70.5세 이상으로 최소인출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제도로 인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2006년 동안 IRA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가구 중 20%는 생활비 그리고 16%가 기타 이유 때문이었으며, 47%가 최소인출 금액제도라는 의무조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인구에서는 최소인출 규정으로 인해 IRA의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반면, 젊은층에서는 생활비 및 의료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중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6〉 전통형 IRA 중도인출 사유(1996~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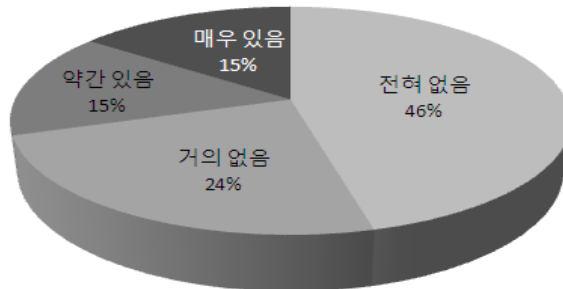
중도인출 사유	비중(%)	연령별 중도인출 비중(%)		
		59세 미만	59~69세	70세 이상
최소인출금액	47	10	13	75
생활비	20	29	35	11
의료비	9	12	10	7
재투자	7	8	11	6
주택구입	3	6	4	1
내구재 등 구매	8	10	15	4
교육비	3	9	3	1
기타	16	23	23	10
평균액(달러)	14,900	15,800	19,900	12,200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

자료: ICI(2008, 1).

Roth IRA는 다른 IRA와 달리 가입자가 70.5세에 도달하더라도 최소인출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IRA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전통형 IRA 가입자를 대상으로 70.5세가 되기 이전에 IRA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0%가 향후 IRA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미국 IRA 가입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IRA를 최대한 오랫동안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6〉 70.5세 이전 IRA 적립금 중도인출 의향(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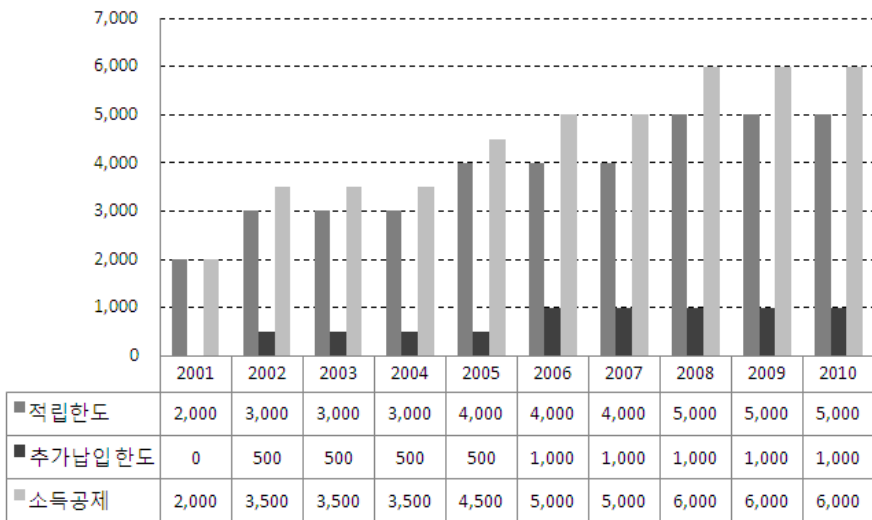


자료: ICI(2008, 1).

이처럼 IRA에 가입한 미국 근로자들이 노후소득 보장 및 강화를 위해 IRA를 적극 활용하게 된 데에는 충분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보다 근로자 개인의 자조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IRA 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통형 IRA의 경우 매년 적립금액 5,000달러를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적 적립금 1,000달러를 포함한 6,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즉, 50세 이상의 기혼자의 경우 총 1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총 가구 소득에서 12,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힘입어 근로자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은퇴 이후 지출로 사용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IRA에 충분한 적립금을 개인 스스로 쌓아 노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IRA 적립금액 및 추가납입한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를 유연하게 증가하여 은퇴자들이 IRA 적립금을 이용하여 노후의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림 IV-7〉 IRA 적립금 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 추이 (단위: 달러)



이처럼 세제혜택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50.5세 이전에는 IRA 적립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인의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축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50.5세 이전에도 생애 첫 번째 주택구입, 교육비 및 건강악화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인정하지만 이외의 인출에 대해서는 무거운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50.5세 이전의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의 IRA 제도는 개인의 자조노력을 시장원리로 강조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강제성을 활용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IRA 적립금을 부동산, 골동품, 다이아몬드, 수집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신 이외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여 개인들이 IRA를 활용하여 노후자산을 축적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IRA 자산운용에 따른 손익에 대한 책임은 DC형 퇴직연금처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IRA 제도에서는 자산운용상의 유연성과 함께 상속에 대한 유연성도 제공하고 있다. IRA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잔액을 상속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는 사망한 IRA 가입자가 70.5세가 되는 시점까지 연금수령을 지연하거나 자신의 IRA로 전환할 수 있다. 사망자의 IRA가 배우자의 IRA로 전환될 때에도 역시 본인이 IRA에 적립하는 것처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상속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IRA가 성장한 또 다른 제도적 원인은 '자동이전제도'이다. 미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존의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여 소비 또는 기타 형태의 투자 및 저축으로 노후소득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직 시 중도인출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노후소득재원의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0~5,000달러일 경우 근로자가 다른 계좌로 퇴직

일시금을 이전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IRA로 이전되도록 자동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자동이전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이전금의 수급 및 자동이전금의 투자를 위한 수탁자의 의무조항(Safe Harbor Requirements)’을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조항은 6개이며, 2005년 3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이전 한도: 자동이전은 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정보 제공: 자동이전은 반드시 IRA로 이전되어야 하며, 자동이전금 수탁자는 IRA 제공자에게 자동이전금의 투자,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 ③ 투자의 제한: 자동이전금의 투자는 반드시 원금보장상품이면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는 이전과 인출이 자유롭도록 유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수수료와 비용: 자동이전 IRA에 부과되는 비용(개설비용, 수수료, 투자비용, 종료비용 및 양도비용), 기타 IRA에 부과되는 비용보다 높게 설정될 수 없다.
- ⑤ 공시: 자동이전 IRA의 운영 및 비용과 관련된 제반 정보는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⑥ 거래금지 조항: 자동이전 IRA의 운용과정에서 ERISA406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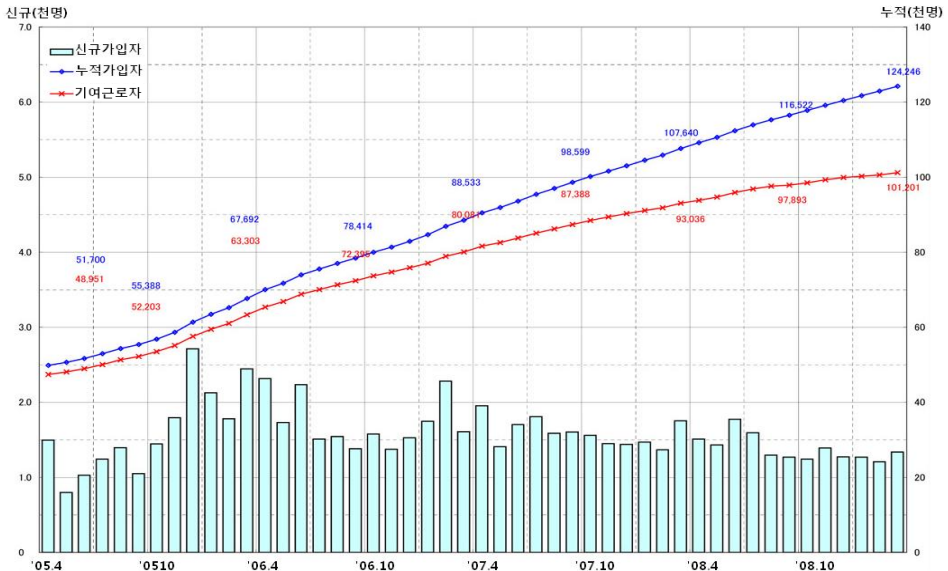
나. 일본

일본은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은퇴준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의 IRA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4월부터 개인형 확정기여연금제도(이하 ‘일본 IRA’이라 함)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IRA 제도

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기여한 연금 보험료를 개인별 계정으로 명확하게 분리·적립하여 개인의 운용책임 하에 적립금의 수익에 따라 연금급부가 결정되는 연금제도이다. 일본의 IRA 제도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라는 기금관리 운영주체를 두고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일본의 IRA 제도는 가입자가 자산운용을 지시하고 개인별로 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은 가입자격의 제한 등으로 미국 처럼 적립금 이전 장치기능이 활발하지 못해 현재 미국의 IRA 제도를 기초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IRA 제도가 2002년 4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3월말 현재 IRA 가입자는 약 10만 명으로 단순히 연금자산의 운용지시만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지시자를 포함할 경우 13만 8천 명 정도이다.

〈그림 IV-8〉 일본의 IRA 가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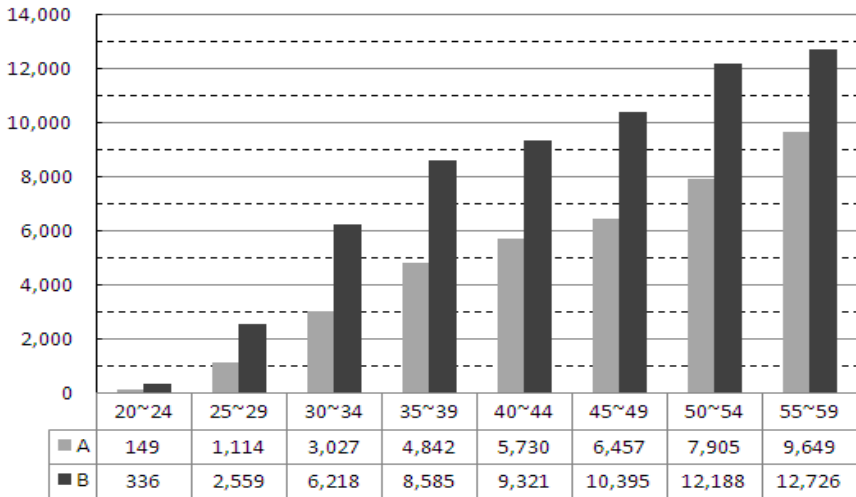


주: 기여근로자는 현재 연금 보험료를 기여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누적가입자는 기여근로자에 단순히 연금운용 지시를 하는 운용지시자를 포함한 가입자를 의미함.

자료: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일본 IRA 제도의 가입자 구성은 자영업자보다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3월 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운용지시자를 제외한 기여단계에 있는 가입자 중에서 근로자는 62,328명이며, 자영업자는 38,873명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각각 61.6%, 38.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가입자 분포는 55세 이상에서 59세 미만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70,053명으로 여자의 31,148명 보다 많아 남자(69.2%)의 구성비가 여성(30.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9〉 일본의 IRA 가입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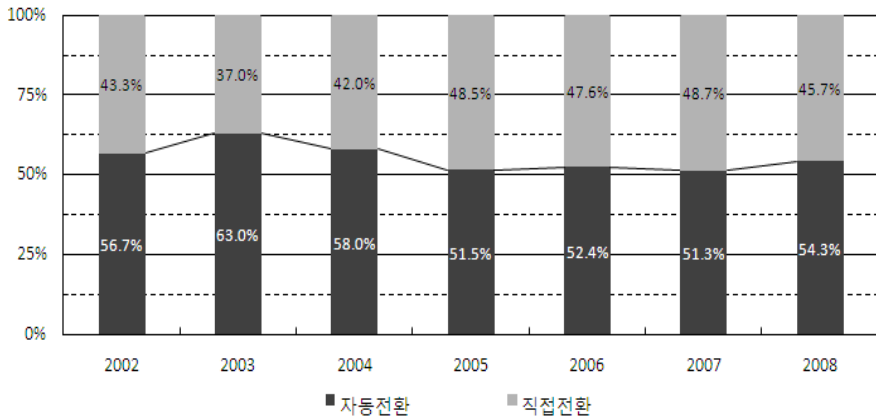


주: A는 자영업자이며, B는 근로자임(2009년 3월 말 기준).
 자료: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또한 종전의 퇴직연금에서 탈퇴하여 IRA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전환하는 경우, IRA 제도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전환은 종전의 퇴직연금에서 탈퇴한 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전환절차에 밝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적립금이 자동 이전된다. IRA 제도로의 자동전환 가입자는 2002년 IRA 제도를 도입 시부터 직접전환 보

다 가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전환 가입자는 2008년 말 현재 54.3%로 직접 전환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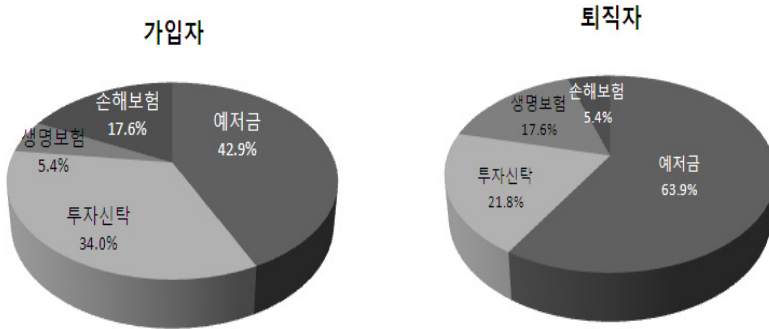
〈그림 IV-10〉 일본 IRA 직접/자동전환 구성비 추이



자료: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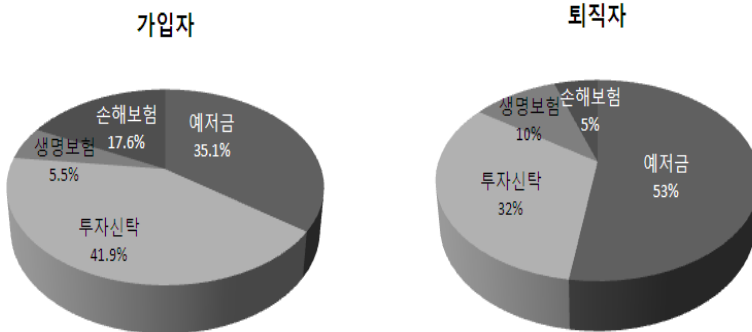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은 예저금(預貯金)상품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신탁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가입자의 예저금 적립금 비중은 42.9%이었으나, 2006년에는 35.1%로 감소한 반면, 가입자의 투자신탁은 2005년 34.0%에서 2006년 41.9%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퇴직 후 적립금의 자산운용을 지시하는 퇴직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기여 단계에 있는 가입자보다 예저금의 투자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가입자 적립금의 예저금 비중은 35.1%인 반면, 퇴직자의 예저금 비중은 52.3%로 17.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퇴직자의 예저금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적 활동 시기인 기여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반면, 은퇴 후 퇴직자의 경우 자산운용을 소극적으로 하여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림 IV-11〉 IRA 자산배분 사례(2005년)



자료: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

〈그림 IV-12〉 IRA 자산배분 사례(2006년)



자료: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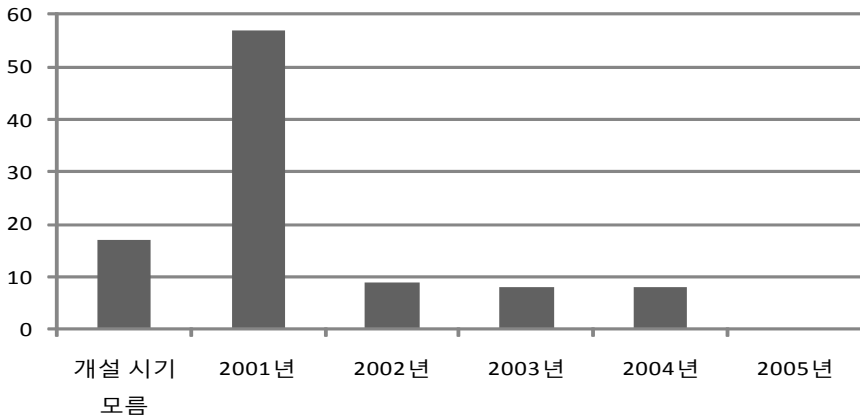
다. 영국

영국은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공제 및 운용 시 비과세 등 세제지원이 부여되고 가입비용이 저렴한 스테이크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을 2001년 4월에 도입되었다. 스테이크홀더연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결합된 연금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지만 과감한 세제혜택과 저렴한 가입비용을 제공하여 중산층 이상의 퇴직연금 미가입 계층을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

인형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2001년 4월 이후로 도입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도입건수를 보면 스테이크홀더연금 도입은 대부분 2001년에 이루어졌으며(57%), 그 이후 신규 가입은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되었던 초기에 기업이 신탁형연금제도를 종료하고 계약형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과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일시적으로 동 연금으로 대거 몰려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스테이크홀더연금제도의 가입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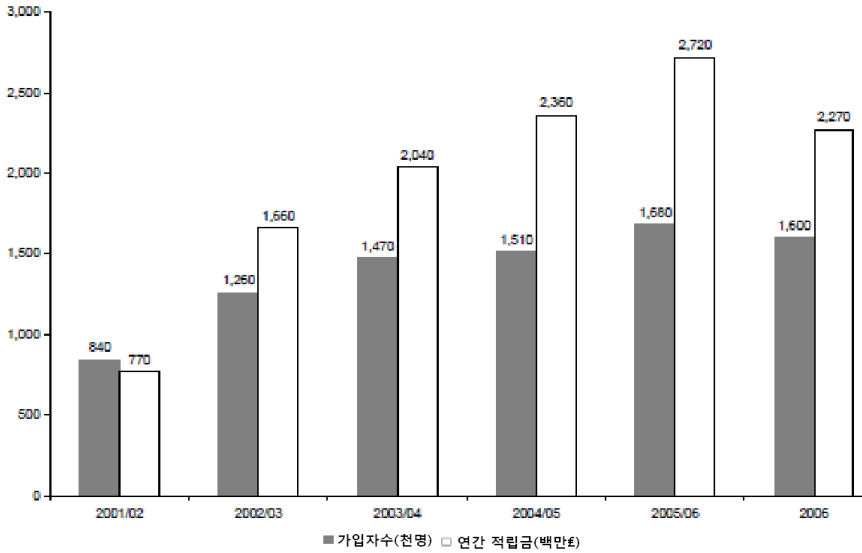
〈그림 IV-13〉 스테이크홀더연금 도입 시기



자료: Stephen McKay, *Employer's Pension Provision Survey 2005*,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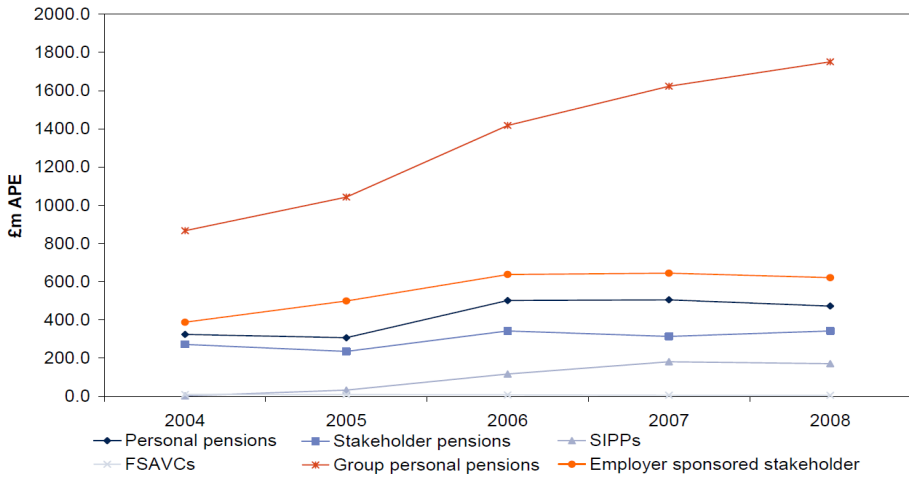
스테이크홀더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의 허가된 금융상품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이 보험회사에 의해 가입되고 있다. 2007년 3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등록한 있는 스테이크홀더 연금상품은 45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연금제도에서 스테이크홀더연금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규가입에 의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 연금은 소기업이나 특수한 분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IV-14〉 스테이크홀더연금의 가입자 수 및 적립금 추이



근로자가 스테이크홀더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고용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기여 수준은 연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1,760 파운드를 동 연금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또는 5~12인 이하의 기업에 비해하여 근로자 수가 100~499인 기업이 스테이크홀더연금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있는 사용자는 스테이크홀더연금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가 스테이크홀더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낮은 수준이다. 10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12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입자 수는 현저하게 작게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크홀더연금의 2008년 말 연금 보험료는 2004년 말(272만 파운드) 대비 5.9% 증가한 342만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 스테이크홀더연금 보험료 추이



자료: Datamonitor.

라. 독일

독일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2001 연금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하였다. 독일보험협회에 따르면 리스터연금 신계약실적은 도입 첫해에 257만 건이었으나 이후 계속 실적이 저조하다가 2005년부터 신계약이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리스터연금의 신계약 판매가 급증한 원인에는 보조금 신청절차가 기존의 매년 신청에서 한번 신청으로 간소화되었고 퇴직 시 적립금의 30%까지 일시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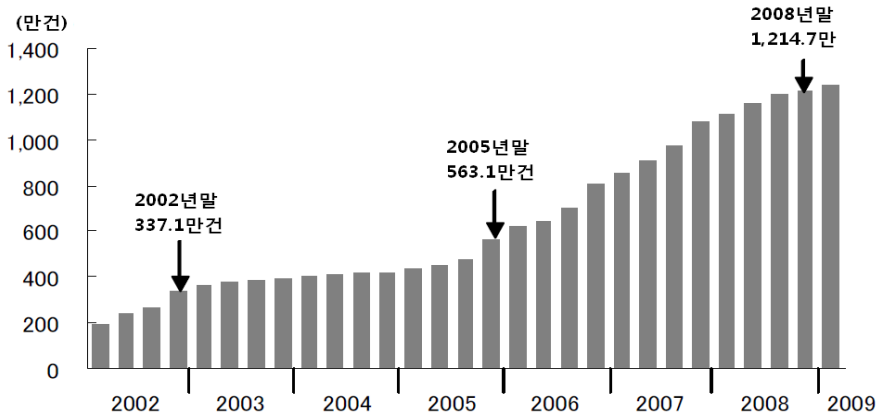
〈표 IV-7〉 리스터연금의 신계약 건수 추이

(단위: 천 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계약 건수	2,570	521	296	1,119	2,012	2,067

자료: 독일보험협회(GDV).

〈그림 IV-16〉 리스터연금 가입건수 추이



자료: 독일연방노동청(BMAS); 독일투자신탁협회(BVI).

현재 생보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리스터연금의 금융권 역별 보유계약건수는 생보사가 약 75.4%(2009년 3월 말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19.7%), 은행(4.6%)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초기에는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했지만(2003년까지 가입률이 16.6%), 보조금의 액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6월 현재 가입자 수가 900만 명에 이르고 있어(〈표 IV-8〉 참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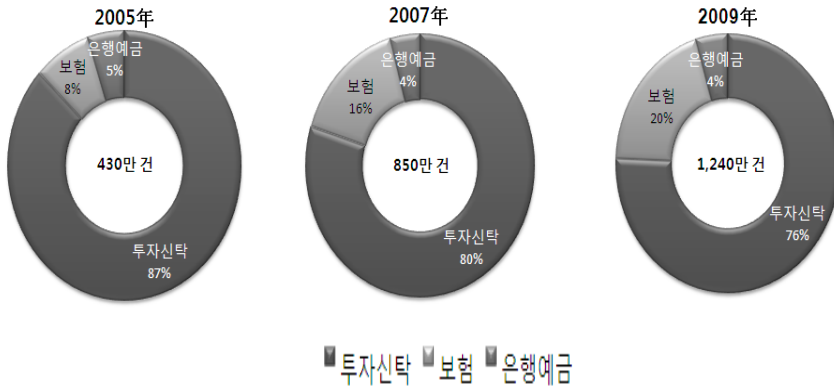
〈표 IV-8〉 리스터연금의 보유계약 추이

(단위: 계약 건수)

연도/분기	보험	은행	투자사	전체
2001	1,400,000	-	-	1,400,000
2002/Q1	1,900,000	50,000	2,500	1,952,500
2002/Q2	2,300,000	60,000	50,000	2,410,000
2002/Q3	2,500,000	68,000	60,000	2,628,000
2002/Q4	3,047,000	149,500	174,000	3,370,500
2003/Q1	3,280,000	161,600	180,000	3,621,600
2003/Q2	3,385,000	177,300	187,000	3,749,300
2003/Q3	3,480,000	180,100	194,000	3,854,100
2003/Q4	3,486,000	197,440	241,000	3,924,440
2004/Q1	3,564,000	202,100	244,000	4,010,100
2004/Q2	3,633,500	207,400	256,000	4,096,900
2004/Q3	3,689,000	208,000	270,000	4,167,000
2004/Q4	3,660,500	213,000	316,000	4,189,500
2005/Q1	3,753,000	218,000	338,000	4,309,000
2005/Q2	3,909,800	224,500	346,000	4,480,300
2005/Q3	4,120,400	230,000	381,000	4,731,400
2005/Q4	4,796,900	260,000	574,000	5,630,900
2006/Q1	5,249,000	268,000	689,000	6,203,000
2006/Q2	5,345,000	278,000	811,000	6,434,000
2006/Q3	5,725,000	303,000	937,000	6,965,000
2006/Q4	6,468,000	351,000	1,231,000	8,050,000
2007/Q1	6,776,000	368,000	1,346,000	8,490,000
2007/Q2	7,206,000	396,000	1,475,000	9,077,000

자료: Deutsche Institut fuer Altersvorsorge.

〈그림 IV-17〉 리스터연금 금융권별 가입건수 추이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임.
 자료: 독일투자신탁협회(BVI).

리스트어연금의 또 다른 목적은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리스터연금의 가입자에서 중·저소득층의 비중도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제시되고 있다. 〈표 IV-9〉는 리스터연금의 소득계층별 가입자비율이다.

〈표 IV-9〉 리스터연금의 소득계층별 가입자 비율

(단위: %)

연간소득(유로)	2002가입자	2003가입자	2004가입자
10,000까지	28.9	28.0	27.6
10,000~20,000	22.8	21.5	23.1
20,000~30,000	20.9	20.7	20.1
30,000~40,000	13.8	14.7	13.9
40,000~50,000	6.6	7.6	6.9
50,000 이상	7.0	7.5	8.4

자료: 齋田 温子(2009. 9).

현재 공적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30,000유로임을 감안할 때, 2004년 가입자 중 연간소득 30,000유로 이하인 가입자 비율은 70.8%에 이르는 반면 저소

득층에 속하는 연간소득 10,000유로 이하인 가입자의 비율은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중에서 중·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리스터연금은 저소득층 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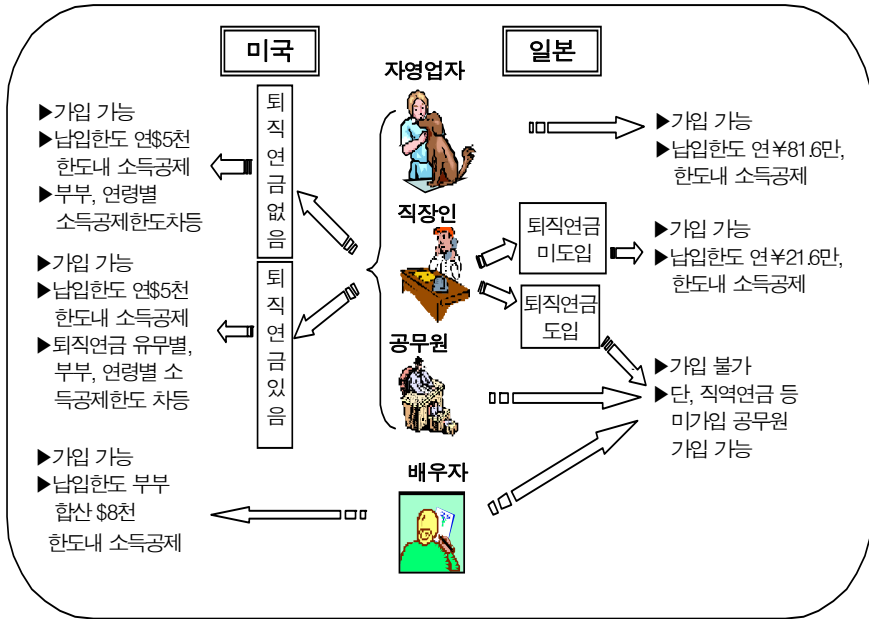
가. 가입대상 및 납입한도

1) 미국

전통형 IRA는 가입대상 범위가 넓고,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매년 각출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격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배우자까지 근로상태 및 직종에 관계없이 70.5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일시금의 일부만을 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5천 달러까지 납입액 제한이 있으나 연간 최소 납입제한이 없으며, 50세 이상은 IRA에 추가 납입(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하다. 특히 납입액을 제한하는 이유는 고소득자들이 납입액을 증가시켜 세제혜택을 받을 경우 국가적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고 소득재분재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Roth IRA 제도의 적립금 상한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보다 낮아야 하며 <표 IV-10>의 금액보다도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00달러일 경우 5,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2,000달러라면 2,000달러가 적립금 한도액이 된다.

〈그림 IV-18〉 미국과 일본의 IRA 가입 대상 자격



〈표 IV-10〉 전통형 IRA의 적립금 연령별 상한 추이

(단위: 달러)

연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1998~2001	2,000	2,000
2002~2004	3,000	3,500
2005	4,000	4,500
2006~2007	4,000	5,000
2008~2010	5,000	6,000

주: 2009년부터 적립금 상한액은 물가와 연동되어 인상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2010년에는 물가인상 정도가 높지 않아 동일한 적립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Traditional_IRA

SEP IRA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자는 최소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간 근로소득이 최소한 5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SEP IRA는 근로자의 적립금을 사용자가 책임지며 사용자의 지원 금액에 대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IRA에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 지원 IRA(Employer Provided Plan)¹⁷⁾’ 중 하나이다. SEP IRA는 자영업자 자신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적립금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25% 이하이거나 49,000달러(2009년 기준) 이하 이어야 한다. 사용자 자신을 위해 SEP IRA에 금액을 적립할 경우 적립금은 순이익의 약 18.6%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SEP IRA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소득 기준은 245,000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정된 연 수입의 20%와 49,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기여상한으로 하고 있다.

〈표 IV-11〉 SEP IRA의 적립금 상한 추이

연도	적립금 상한액	비고
2005	42,000	사용자는 순이익의 18.6% 이상을 적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임금의 25%와 49,000달러 중 낮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
2006	44,000	
2007	45,000	
2008	46,000	
2009	49,000	
2010	49,000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SEP_IRA;

Equity University(<http://www.trustetc.com/equity-university/irs-contribution-limits.html>).

SEP IRA는 사용자가 IRA의 적립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SIMPLE IRA는 노사 쌍방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각출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사용자 보조가 이루어지는 기타 IRA보다는 적립금 한도가 낮은 편이다.

SIMPLE IRA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 SIMPLE IRA의 기

17) 사용자 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IRA 중에서도 사용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사용자가 적립금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각출해서 적립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본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SIMPLE IRA를 도입할 수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100인 이하로 근로자 수를 유지하다가 SIMPLE IRA를 도입한 이후 100인 이상으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SIMPLE IRA 가입 도중 사업장 규모가 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2년 동안만 SIMPLE IRA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자의 SIMPLE IRA에 사용자는 규칙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다만, 사용자는 최소한 일정금액을 적립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최소적립금액’ 규정이 있다. 사용자의 적립에 대한 의무조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대신 사용자의 적립금은 근로자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사용자는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소득의 2%를 근로자의 적립금액과 상관없이 적립금으로 각출한다.

사용자에게는 최소 지원 금액을 요구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적립금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IRA보다는 한도액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적립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은 추가 금액을 적립(Catch-up Provision)할 수 있으며 현재(2010년) 추가 적립금 상한은 2,500달러로 401(k), 403(b) 그리고 457의 5,000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V-12〉 SIMPLE IRA의 적립금 연령별 상한 추이 (단위: 달러)

연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2005	10,000	12,000
2006	10,000	12,500
2007	10,500	13,000
2008	10,500	13,000
2009	11,500	14,000
2010	11,500	14,000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SIMPLE_IRA

2)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위탁한 운영관리회사인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 회사에 IRA를 가입하면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가입자 자격유무 확인하여 운영 관리회사에 통보하는 가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 학생과 60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소속 기업이 후생연금기금, 확정급부퇴직연금, 적격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 연금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피부양 배우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의무제도가 아니라 임의제도로써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월 68,000엔, 근로자는 월 18,000엔으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외에도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연금에만 가입할 수 있어 기여한도가 더 크다.

3) 영국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스테이크홀더연금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기여금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테이크홀더연금은 확정기여형 제도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있고,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5인 이상 기업이면 스테이크홀더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강제화되어 있으며, 보다 간단하고 단일화된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은 평균 2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스테이크홀더연금은 중·저소득 근로자(연평균 임금 1만~2만 파운드)이면서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을 주 가입 유도 대상으로 하였다. 가입자가 기여를 중단하거나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더라도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직이 잦은 산업의 근로자, 불완전고용층 및 자영업자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여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액수가 작은 경우를 대비하여 수수료를 총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여 중·저소득 근로자의 제도 가입을 유도하였다.

퇴직연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스테이크홀더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담금 납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스테이크홀더연금에 기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스테이크홀더연금은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로 스테이크홀더연금에 가입해 운용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테이크홀더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소득 3만 파운드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연간 3만 600파운드까지 허용된다.

4) 독일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삭감에 따른 연금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연금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급여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대상이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공적연금에 가입된 일반노동자, 사회보험료 납입 수공업자와 예술가, 전업주부 등이다. 반면, 리스터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공적연금의 가입 의무에서 제

외된 자영업자, 공무원, 사회보험료 미납자 등이다. 리스터연금은 생보사가 취급하는 연금보험, 은행의 예금, 투자신탁회사의 투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리스터 연금을 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위해서는 연방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납입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의 합계액으로 구성된 원금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
- ② 60세 이전까지 또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급부를 지급하지 않을 것
- ③ 종신연금으로 급부가 보장될 것
- ④ 2005년 이후 신규계약부터 신규계약체결비용을 최저 5년간 균등 상각할 것

〈표 IV-14〉 리스터연금 최대 보험료율과 보험료

연도	소득대비 최대 보험료율	최대 보험료
2000~2003	1%	525유로
2004~2005	2%	1,050유로
2006~2007	3%	1,575유로
2008년부터	4%	2,100유로

개인기여와 정부보조금이 연금재원이 되며,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기여의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1%(2002년), 2%(2004년), 3%(2006년)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소득의 4%를 상한으로 적용이 허용되었다. 최대보험료는 2002년~03년 525유로, 2004~05년 1,050유로, 2006~07년 1,575유로, 2008년 이후 2,100유로이다.

〈표 IV-15〉 가입 및 납입한도 비교

구분		미국 (전통형 IRA)	일본 (IRA)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트연금)
가입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급기관 •가입자격 •연령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 과세 소득자, 공무원, 배우자 • 70.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우체국 • 자영업자, 근로자 • 20세 이상~6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 고소득 근로자 • 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 65세
납 입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결정 •납입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입 • 연간 5,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입 • 자영업자: 연 81.6만 엔 • 근로자: 연 27.6만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근로자 기여, 사용자는 의무사항이 아님 • 30,000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가 납입 • 2,100유로

나. 연금세제

1) 미국

미국 IRA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EET 방식의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입자 특성별로 소득공제가 차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E),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 급부단계에서 과세(T)하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한도 금액까지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8천 달러, 50세 이상의 경우 6천 달러까지 차등화되어 있다. 또한, 퇴직급여의 80% 이상 납입으로도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급부 시 고령자에게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시니어 세율(Senior Citizen Effective Tax Rate)을 적용하게 된다.

가) 전통형 IRA

연간 적립금 상한 이내에서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금 또는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소득세(Federal Income Tax)’가 부과된다. 또한 전통형 IRA에 적립된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이자, 배당 및 기타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975년 전통형 IRA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적립금 상한은 1,500달러 또는 연간 소득의 15%이었으나 점차 한도가 인상되었으며 현재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적립금 한도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다. 2010년 현재 개인을 기준으로 49세 이하는 적립금 상한액이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이며, 49세 이하의 기혼자는 10,000달러, 50세 이상의 기혼자는 12,000달러가 상한액이다.

〈표 IV-16〉 최근 전통형 IRA의 적립금 연령별 상한

(단위: 달러)

연도	49세 이하	50세 이상
2005	4,000	4,500
2006~07	4,000	5,000
2008	5,000	6,000
2009	5,000	6,000
2010	5,000	6,000

주: 2009년부터 적립금 상한액은 물가와 연동되어 인상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2010년에는 물가인상 정도가 높지 않아 동일한 적립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Traditional_IRA

전통형 IRA의 가장 큰 장점은 적립시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며, 단점은 인출 시 다른 연간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이다. 인출 시 세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단점은 50.5세 이전에는 인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70.5세가 되면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최소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제도는 IRA에 가입한 사람들의 연령이 70.5세

가 되면 의무적으로 매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강제제도이다. 70.5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4월 1일 이전에 최소인출금액을 찾기 시작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부터 해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최소인출금액을 찾아야 한다. 최소인출금액의 규모는 IRA의 종류, 배우자의 나이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되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 최소인출금액의 50%를 벌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50.5세 이전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의무 적립금액의 50%는 자동적으로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의해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IRA에 적립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른 종류의 IRA에 비해 까다롭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전통형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10년 수정조정 총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177,000달러 이하 이어야 한다.

나) Roth IRA

Roth IRA가 전통형 IRA와 다른 점은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형 IRA와 달리 적립금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통형 IRA에서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세율이 현재 Roth IRA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하는 근로자들은 전통형 IRA보다는 Roth IRA를 선호하게 된다. Roth IRA와 전통형 IRA의 상한액이 동일한 것 같지만 전통형 IRA는 적립 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Roth IRA는 세제 후 적립금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Roth IRA의 상한액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9.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00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세금도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Roth IRA의 또 다른 특징은 70.5세 이후에도 인출을 강요받지 않고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에도 Roth IRA에 지속적으로 추가금액을 적립하며 Roth IRA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따로 Roth IRA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적립금을 자신의 Roth IRA에 포함시킬 수 있고 어떠한 패널티를 지불하지 않는다.

전통형 IRA와 달리 적립금을 쌓을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단점 외에도 인출 시 면제되는 세금 혜택들에 대한 법적 제도들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Roth IRA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수정조정 총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20,000달러 이하이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177,000달러 이하이어야 Roth IRA에 가입할 수 있다.

다) SIMPLE(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은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100명 이하인 기업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격연금으로 인정한다. 기업은 이 제도 외에 다른 적격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된다.

라) SEP(Simplified Employee Plan)

SEP는 사용자가 다른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에 IRA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IRA에 기여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IRA에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기여할 수 있는 한도는 45,000달러(2007년 기준)와 가입자 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이며, 기여금은 근로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IRA 계정에서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를 이연해 준다. 근로자의 소득세액 산정 시 부담금의 소득 공제방법은 'IRA 규정'을 준용한다.

〈표 IV-17〉 전통형 IRA와 Roth IRA 세제지원 비교

구분	전통형 IRA	Roth IRA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0달러 • 2008년 말 현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 • 소득에 따른 상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0달러 • 2008년 말 현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 • 소득 및 부부합산 여부, 다른 IRA 보유여부에 따라 위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 • 소득, 부부합산 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 공적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능
국세청 보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납입금이 있을 때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연금과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소득으로 과세됨 • 단,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납입금이 있을 경우 일부 면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연금수령에 대한 국세청 보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납입금이 있을 때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자료: 민세진(2008, 12).

2) 일본

일본은 퇴직연금에 세제우대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가입자의 기여단계에서는 연금 보험료에 대한 일정한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제공되고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된다. 급여단계에서는 연금수령액에서 공적연금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공적연금공제 대신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표 IV-18〉 일본의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20년 이하	40만 엔 × 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 초과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기여단계의 연간 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상이하며 가입자의 연간 연금 보험료 납입한도까지 가능하다. 또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액이 인상되었다. 2010년 1월부터 근로자는 종전의 연간 216,000엔에서 연간 276,000엔으로 인상되었으며, 자영업자는 인상 없이 816,000엔이다.

〈표 IV-19〉 일본의 IRA 제도 단계별 과세제도

기여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 근로자: 연 276,000엔 - 자영업자: 연 816,0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납입액 및 운용이익은 특별 법인세 과세 대상(단, 2010년까지 유예) •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체결했던 연금계약관련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받는 일정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작성하는 확정기여형연금의 지출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급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공적연금 등 공제 적용 - 일시금: 퇴직소득으로 과세 • 장해급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비과세 • 사망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 대상(단, 1인당 500만 엔까지 비과세) • 탈퇴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개인주민세 과세

자료: 보험개발원(2008).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체결하였던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적립금 운용이익은 특별 법인세 과세대상이지만 2011년까지 유예되고 있다.

또한 노령급부를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공적연금 등의 공제가 적용되나, 일시금으로 수령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사망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가입자가 탈퇴할 경우 소득세, 개인주민세 등이 과세된다.

3) 영국

영국의 스테이크홀더연금은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들을 만족하는 연금으로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크홀더연금가입자는 기여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되는데, 스테이크홀더연금에 기여하는 1파운드당 0.28파운드를 스테이크홀더연금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게 된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인 2,808파운드를 기여한 경우, 환급되는 세금액은 약 790파운드가 된다. 고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의 명의로 스테이크홀더연금을 개설한 후에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은퇴 시에는 총 적립금액의 25%를 비과세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The Finance Act 2004에 의해 2006년 4월 6일부터 발효된 사적연금관련 세제개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개인이 동시에 복수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연금을 통해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없지만 세제혜택에는 한도가 존재한다.
- ③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납입액의 상한은 영국 내 소득 전액과 2,880 파운드(2008/2009 과세연도 기준) 중 큰 액수이다.
- ④ 납세자가 아니어도 연금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⑤ 가입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지나면 은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⑥ 총 적립금액의 25%를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4) 독일

리스터연금의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이 보조금이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부분만 납입하면 된다. 리스터보조금은 2002년에 도입된 이래 그 지원금이 점차로 인상되었고, 최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의 수준도 점차적으로 상향되었다.¹⁸⁾

리스터연금은 강제가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은 정액이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크다. <표 IV-20>은 리스터연금에서 소득별, 가족상황별 보조금의 액수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간소득이 5,000유로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지원금의 비율은 92%가 된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만 유로이며 독신인 경우의 44%에 비해 월등히 지원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리스터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표 IV-20>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득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가입기간 동안에는 보험료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이는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입 시에는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보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 수준(공적연금과 합한)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8) 제도가 도입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최대 38유로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전 해 총임금의 1%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었고,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최대 75유로 보조금과 총임금의 2%까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최대 114유로 보조금과 총임금의 3%까지, 2008년 이후에는 154유로(약 18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총임금의 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었다. 보험료 납입액이 이보다 낮아지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도 그만큼 감소한다. 또한 정액보조금이 이미 소득의 4%를 넘는 경우에는 60유로의 최소 본인부담액이 적용되었다.

〈표 IV-20〉 소득·가족상황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

(단위: 유로)

〈예 1〉 두 자녀를 가진 부부(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308	370	60	738	-	92
15,000	308	370	60	738	-	92
25,000	308	370	322	1,000	-	68
40,000	308	370	922	160	-	42
50,000	308	370	1,322	2,000	-	34
75,000	308	370	1,422	2,100	-	3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예 2〉 무자녀, 독신인 경우(2008년부터)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금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
5,000	154	-	60	204	-	75
15,000	154	-	446	600	-	26
25,000	154	-	846	1,000	141	30
40,000	154	-	1,446	1,600	432	37
50,000	154	-	1,846	2,000	672	41
75,000	154	-	1,946	2,100	777	44
100,000	154	-	1,946	2,100	777	44

자료: 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또한 리스터연금의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상한액(2008년에 2,100유로)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경우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받게 되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터 보조금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감한 액수만 환급해 주게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는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혜택만 받게 된다. 중도 해약의 경우에는 보조금은 전액 환수,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표 IV-21〉 리스터연금 보조금 및 소득공제

구분	2002~03	2004~05	2006~07	2008 이후
기초지원금 한도액	38유로	76유로	114유로	154유로
육아지원금 한도액	46유로	92유로	138유로	185유로
지원금 한도액까지 받기 위해 필요한 연간 기여액(세전소득 비율)	1%	2%	3%	4%
연간세전소득에서 특별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기여액(본인기여+지원금) 상한	525유로	1,050유로	1,575유로	2,100유로

결과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공적연금에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스스로 적립하게 유도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소득을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통해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IV-22〉 주요국의 세제지원 비교

구분	미국 (전통형 IRA)	일본 (IRA)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	독일 (리스터연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이내	납입한도 이내	보조금 지급	납입한도 이내 보조금지급 소득공제 선택
운용단계	비과세	비과세(한시적)	비과세	비과세
급부단계	통상소득으로 과세	과세 (단, 연금급부 시 공제 적용)	비과세 (한도이내)	소득세 과세

다. 연금 급부

1) 미국

미국은 은퇴 이후에도 각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 급부 개시와 동시에 각출금 납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즉, 급부가 59.5세부터 시작하지만 70.5세까지 여유자금에 있을 경우에는 납입이 가능하며, 70.5세부터

는 의무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급부는 일시금, 연금 및 수시적인 지급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급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59.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사고가 발생하며 고액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경우 과세이연이 되지 않으며 10%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IMPLE IRA에서는 조기 인출에 대해 무거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SIMPLE IRA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기에 인출하거나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계좌로 이전하면 인출금액의 25%를 국세청에서 차압한다. 또한 계좌 소유자의 연령이 59.5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함께 10%의 추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 일본

IRA 제도의 급여방법으로는 노령급여, 장애급여, 사망일시금 등 세 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급여와 장애급여는 5~10년의 유기형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운영관리기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노령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60세부터 70세 사이에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60세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개시 연령이 달라진다. 예컨대, 가입기간이 8년일 경우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6년일 경우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급여는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상해에 의해 일정 이상의 장애상태가 된 가입자가 상해발생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적립금 잔액을 수령할 수 있다.

3) 영국

스테이크홀더연금제도에서 수급연령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종전에는 50세부터 가능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5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연금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수령 시점에서 총 연금자산의 25%를 비과세로 현금수령한다. 나머지 75%는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을 구매해야 한다.

4) 독일

독일의 연금개혁 특징은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적·규제적 조치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후소득보장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특히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은 60세 이후 또는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 이외의 보험금은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함께 도입되었다. 즉, ‘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본인 부담분과 정부보조금) 이상의 보험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금보장원칙과 ‘보험금이 제3자에 이전되거나 차압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호규정, ‘보험회사의 행정·운영비용 환수를 5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리스터연금의 보험금은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의 자산조사에서도 제외된다. 나아가 자본시장 변동으로 인한 적립자산의 과대한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터연금의 보험자는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여성의 보험금이 남성에 비해 낮게 산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한 보험료 납부 시 남녀에게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동일계정(Unisextarif)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독일 리스터연금은 60세 이후 공적연금의 수령 개시와 동시에 가능하며, 지급 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 30%를 제외하면 한 달 단위로 정기종신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인출 및 해지는 불가능하다.

리스터연금의 연금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에게만 국한되며, 연금잔액의 30%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가족의 주거목적으로 자기주택을 구입할 때 계정잔액 한도 내에서 10,000~50,000유로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대출 2년 후부터 연금수령시점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후에 총 크레딧 액수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늦어도 85세 이후에는 나머지 60%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만 한다.

〈표 IV-23〉 연금급부방식의 비교

구분	미국 (전통형 IRA)	일본 (IRA)	영국 (SHP)	독일 (리스터연금)
지급방식	일시·수시 ·연금지급	일시·일부 ·연금지급	일시금· 연금지급	일시금· 연금지급
급부개시 요건	사망, 장애, 고액의료비, 주택구입, 고등교육비 등	노령, 장애, 사망	노령, 장애, 사망	노령, 장애, 사망
급부개시	59.5세부터 가능, 70.5세부터 의무	60세부터	55세부터 (2010년부터)	60세부터

연금급여의 지급방식은 종신연금 형태이고 일시금은 보험지급개시시점에 축적된 자본의 30%로 제한하며, 연금수급액을 모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전의 정부보조금의 환불 및 전액 조세대상이 된다. 노령연금 이외에 추가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리스터연금에 속하는 상품은 인증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다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즉, 은행저축계정, 민간 연금보험상품, 적립형 연금보험상품, 적립식 저축계정, 연금적립금, 연금가입금, 직접보험 등이 있다.

라. 급부이전

1) 미국

근로자가 이직 시 IRA 제도의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본인 계좌에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적립금 규모가 5천 달러를 초과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IRA 가입을 결정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립금의 규모가 1천~5천 달러일 경우 기업이 사전에 지정한 수탁금융회사에 적립금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의 규모가 1천 달러 미만이면 근로자는 60일 이내 적립금을 IRA 제도로 이전해야 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조기인출 사유로 간주하게 되고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다만, SIMPLE IRA는 401(k)와 달리 전통형 IRA에 이전할 수 없으며, SEP IRA나 전통형 IRA는 SIMPLE IRA로 이전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표 IV-24〉 미국 IRA의 이전 방식

적립금 규모	이전 방식
5천 달러 이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IRA 가입 결정(근로자 동의 필요)
1천~5천 달러	기업이 사전에 지정한 수탁금융에 적립금이 자동 이전
1천 달러 미만	근로자는 60일 이내 적립금을 IRA 제도에 이전해야 하며, 미 이전 시 조기인출 사유로 간주(근로자 동의 불필요)

2) 일본

일본의 IRA 제도는 개인계좌에 연금자산이 관리되므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회사를 퇴직할 경우 그때까지의 연금자산(개인별 관리자산)을 새로운 퇴직연금 또는 IRA 제도에 이전하여 계속해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IRA 제도의 가입자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거나 퇴직연금을 도

입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IRA 제도에 이전할 수 있다. IRA 제도에서는 각 기업별 신탁은행, 보험회사 등의 자산관리기관에 개별적으로 계약하므로 개인별 적립금은 정산(현금화)되어 이전할 수 있다. 또한 후생연금기금이나 확정급부형연금의 연금자산도 IRA 제도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에서 탈퇴한 6개월 이내에 전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행하거나 기존의 퇴직연금 탈퇴 후 탈퇴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입자의 자산이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는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특정운영 관리기간에 의해 수수료가 징수되고 기록이 전환 관리되며, 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 의해 자산관리가 실시된다.

〈표 IV-25〉 일본의 퇴직급여 이전방식 비교

구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IRA 가입 근로자	IRA 가입 자영업자
퇴직연금이 있는 기업으로 가입자가 이직 시	이직하는 기업의 퇴직연금(DB, DC, IRA) 자산이전	좌동	좌동
퇴직연금이 없는 기업으로 이직 시	IRA 제도 이전	IRA 제도 유지	IRA 제도 유지
자영업자	상동	상동	-
퇴직하는 경우	상동	상동	IRA 제도 유지

3) 독일

독일은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납입된 보험료를 새로운 계약상품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해약금을 물릴 수 없다. 또한, 보험금은 3자에게 이전될 수 없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표 IV-26〉 자산 이전방식 비교

구분	미국(전통형 IRA)	일본(IRA)	독일(리스터연금)
이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시 연금자산 이전 가능 • 새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에 IRA자산 이전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시 새 직장에 퇴직연금이 없을 경우 연금자산을 IRA에 이전가능 • 퇴직 시 IRA에 이전가능 • IRA 가입자가 직장 취업 시 이전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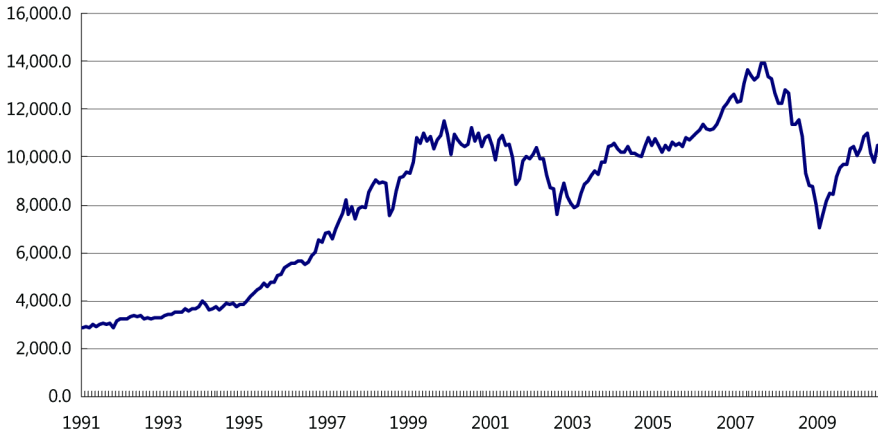
3.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전략¹⁹⁾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IRA 시장에서의 퇴직연금 사업자 운영전략(경쟁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제가 미국의 IRA 제도에 기반을 두고 도입되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운영전략 현황을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 IRA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운영전략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IRA가 도입된 이후 시장 초기 단계 및 발전단계에서는 이미 다른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IRA 시장의 초기 및 발전단계에서는 은행과 보험회사는 금리를 확정해 주는 방식의 자산운용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집중하였고 IRA 가입자들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시장의 공급과 수요원리에 의해 은행과 보험권의 경쟁력이 확보되었다.

19) 영국은 2012년에서 우리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일본은 국민연금 보완차원에서 IRA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사업자 운용사례가 대외비 성격을 띠고 있어 비공개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보험회사 등)의 운영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IV-19〉 미국의 주가지수 추이



미국 IRA 시장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도는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시작되었으며, IRA 가입자들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안전자산보다는 자산운용사의 고수익 자산을 보다 선호하였다. 이러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력 변화는 IRA의 자산운용 점유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져, 2009년 4분기 기준으로 은행예금의 비중은 전체 IRA 적립금액 중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1.8%에 불과하던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2009년 4분기에는 46.2%까지 증가하여 IRA 적립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물가상승률과 같은 시장리스크를 경감시키기에 은행예금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IV-27〉 IRA 적립금의 투자처 규모 및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연도	뮤추얼펀드		은행예금		생명보험		기타 유가증권		IRA 총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0	139	21.8	266	41.8	40	6.3	191	30.0	637
1991	187	24.1	283	36.5	45	5.8	262	33.8	776
1992	235	26.9	275	31.5	50	5.7	313	35.9	873
1993	319	32.1	263	26.5	62	6.2	350	35.2	993
1994	345	32.7	255	24.1	70	6.6	386	36.6	1,056
1995	470	36.5	261	20.3	81	6.3	476	37.0	1,288
1996	589	40.1	259	17.7	92	6.3	527	35.9	1,467
1997	773	44.7	254	14.7	136	7.9	565	32.7	1,728
1998	972	45.2	249	11.6	157	7.3	772	35.9	2,150
1999	1,265	47.7	243	9.2	203	7.7	940	35.5	2,651
2000	1,239	47.1	250	9.5	203	7.7	937	35.6	2,629
2001	1,167	44.6	255	9.7	211	8.1	987	37.7	2,619
2002	1,037	40.9	263	10.4	268	10.6	965	38.1	2,533
2003	1,317	44.0	268	9.0	285	9.5	1,123	37.5	2,993
2004	1,509	45.7	269	8.2	283	8.6	1,238	37.5	3,299
2005	1,688	46.2	278	7.6	308	8.4	1,378	37.7	3,652
2006	2,015	47.9	313	7.4	318	7.6	1,562	37.1	4,207
2007	2,288	47.8	340	7.1	325	6.8	1,831	38.3	4,784
2008	1,585	44.3	391	10.9	310	8.7	1,293	36.1	3,579
2009. Q1	1,491	43.5	410	12.0	309	9.0	1,218	35.5	3,428
Q2	1,678	44.7	424	11.3	307	8.2	1,348	35.9	3,757
Q3	1,876	45.8	429	10.5	306	7.5	1,481	36.2	4,093
Q4	1,953	46.2	431	10.2	303	7.2	1,544	36.5	4,230

자료: ICI(2010, 5).

IRA 자산 중 뮤추얼펀드 비중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02년 사이에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기간은 미국이 주식시장의 침체기간(Bear Market)이었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뮤추얼펀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뮤추얼펀드의 비중도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뮤추얼펀드의 비중은 주식시장의 호황 및 불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IRA 시장의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력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기가 불황이거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까지 은행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11%까지 급증하여 현재까지 두 자리 수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투자수익에 따라 노후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 실적배당 형태의 자산운용 방식 중심으로 IRA자산이 분배되고 있다.

미국의 총 은퇴자산 중에서도 25%가 뮤추얼펀드²⁰⁾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IRA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IRA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은퇴시장에서도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은 은행 및 보험회사에 비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20)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이다.

〈표 IV-28〉 IRA의 뮤추얼펀드 운용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연도	뮤추얼펀드	IRA	비중(%)
1990	206	139	67.5
1991	322	187	58.1
1992	419	235	56.1
1993	582	319	54.8
1994	665	345	51.9
1995	914	470	51.4
1996	1,180	589	49.9
1997	1,558	773	49.6
1998	1,972	972	49.3
1999	2,572	1,265	49.2
2000	2,530	1,239	49.0
2001	2,394	1,167	48.7
2002	2,131	1,037	48.7
2003	2,727	1,317	48.3
2004	2,143	1,509	70.4
2005	3,526	1,688	47.9
2006	4,174	2,015	48.3
2007. Q1	4,317	2,083	48.3
Q2	4,594	2,218	48.3
Q3	4,747	2,303	48.5
Q4	4,697	2,288	48.7
2008. Q1	4,393	2,150	48.9
Q2	4,384	2,142	48.9
Q3	3,899	1,914	49.1
Q4	3,224	1,585	49.2
2009. Q1	3,036	1,491	49.1
Q2	3,451	1,678	48.6
Q3	3,892	1,876	48.2
Q4	4,054	1,953	48.2

주: 2007~2009년 분기별 자료는 누적값임.
 자료: ICI(2010. 5).

IRA에 가입 중인 미국인들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을 선호하며, 실적배당형 운용상품 중에서도 다소 리스크가 높은 주식형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는 가입자들의 자산운용 니즈에 맞추어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용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은행 및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운용상품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IRA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IRA 뮤추얼펀드 자산 2조 달러 중 55.6%에 해당하는 1.1조 달러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으며 주식형 펀드의 75.8%가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IRA 뮤추얼펀드 자산 중 16%에 해당하는 3천 140억 달러가 하이브리드형 펀드에, 3천 230억 달러가 채권형 펀드에, 2천 300억 달러가 머니마켓(Money Market)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표 IV-29〉 IRA의 뮤추얼펀드 자산 운용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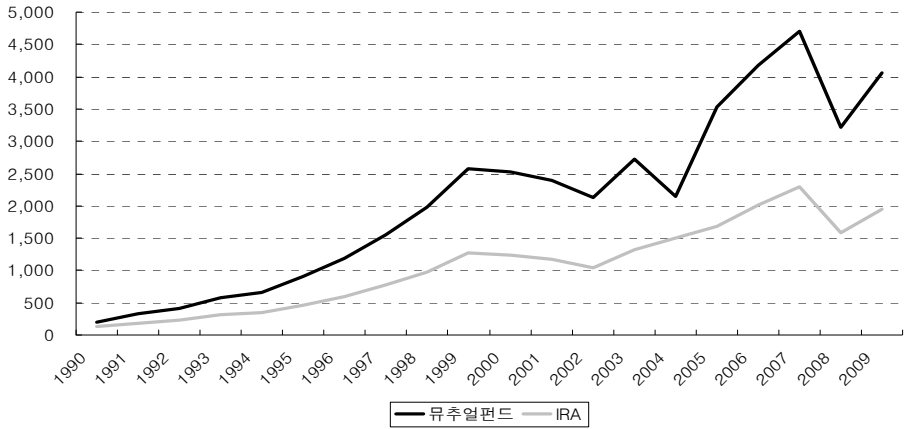
구분	주식형 펀드(Equity)			하이브리드	채권(Bond)	머니마켓(Money Market)	총액
	소계	미국	미국 외				
IRA 자산	1,086	823	263	314	323	230	1,953

자료: ICI(2010, 5).

물론 IRA의 상당 부분이 뮤추얼펀드에 투자되고 있어 자산규모 및 노후소득 재원이 뮤추얼펀드의 운용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은퇴자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IRA의 자산규모 및 수익성은 2008년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다가 금융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2009년에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은퇴시기와 일치하는 가입자들은 자신의 노후소득 상당부분이 감소되는 손실을 보았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림 IV-20〉 IRA의 뮤추얼펀드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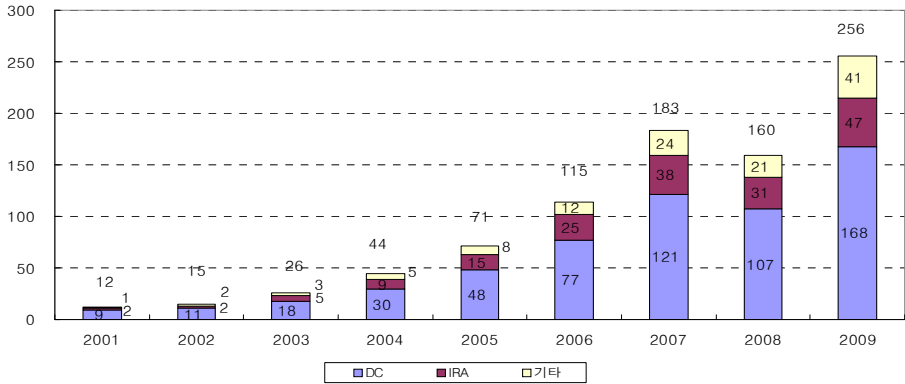
경기가 불황이거나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자산운용사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은행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자산운용사보다 은행을 선호한 결과이기보다는 주식형 펀드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른 일시적인 점유율 변화로 판단된다. 자산운용사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IRA 가입자들의 불만과 변화하는 니즈에 맞추어 새로운 자산운용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IRA 가입자들은 일반 펀드 고객들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쳐 자산을 운용하려는 성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노후소득자산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Lifecycle과 Lifestyle형 자산운용상품을 개발하였다. Lifecycle과 Lifestyle펀드는 IRA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공격적인 투자운영방식을 추구하다가 투자자의 연령이 은퇴연령과 가까워질수록 주식에 편입된 투자자산비율을 점차 감소시켜 안전성을 높이는 자산운용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Lifestyle 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결정된 목표 리스크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용자산을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등급으로 구분하여 IRA 가입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카페테리아식 운영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뮤추얼펀드 중 최근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펀드도 Lifecycle펀드와 Lifestyle펀드이다. 특히 Lifecycle펀드 자산 중 퇴직연금 자산이 2009년 말 기준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IRA 적립금은 18.3%를 차지하고, Lifestyle 펀드 자산 중 IRA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이르고 있다.

〈그림 IV-21〉 Lifecycle 펀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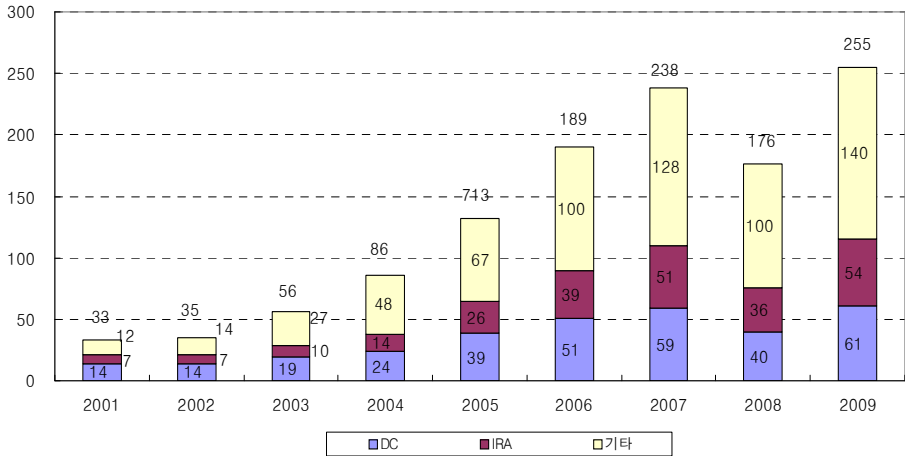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0. 5).

〈그림 IV-22〉 Lifestyle 펀드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0. 5).

미국의 IRA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은행 및 보험회사도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맺어 자산운용사의 운용상품을 자사의 자산운용 풀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이 이미 우월한 상황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의 IRA 가입자들은 실적배당형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자산운용사에 있다는 기존 이미지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운용사도 은행 및 보험회사의 상품을 자사의 운용상품 풀에 포함시켜 타 금융권의 운영전략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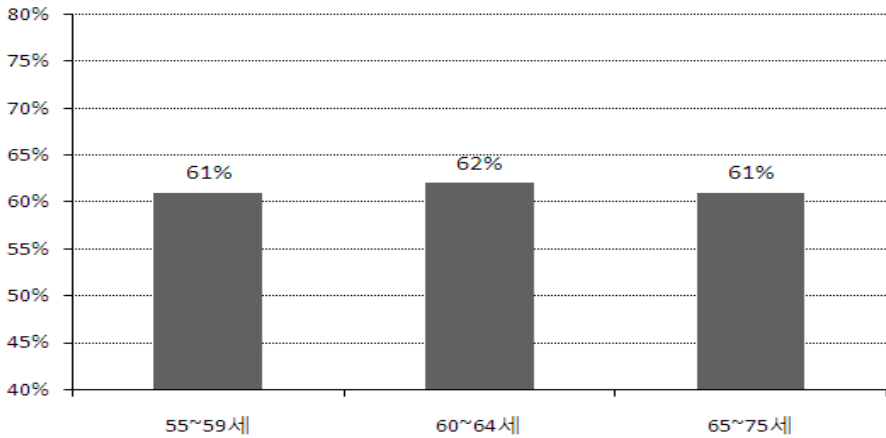
최근 보험회사는 IRA 가입자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보다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상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잠재고객에게 IRA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종신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있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IRA의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노후에 대한 관심도 약해 연금상품과 연계한 운영전략은 IRA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은퇴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노후소득 이외에도 건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장기간병보험과도 연계하여 IRA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²¹⁾

또한 IRA 가입자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비해 은퇴시기가 빨리 도달하거나 은퇴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재무설계서비스를 활용한 운영전략과 서비스제공에 기초한 수익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재무설계서비스와 연계한 IRA 운영전략은 은퇴시기가 가까운 연령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은퇴가 가까워진 연령층이 자산소진기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은퇴 이전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재무설계서

21) LIMRA가 은퇴시기가 가까운 55~69세를 대상으로 가구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795명을 대상으로 설문(2009)한 내용에 근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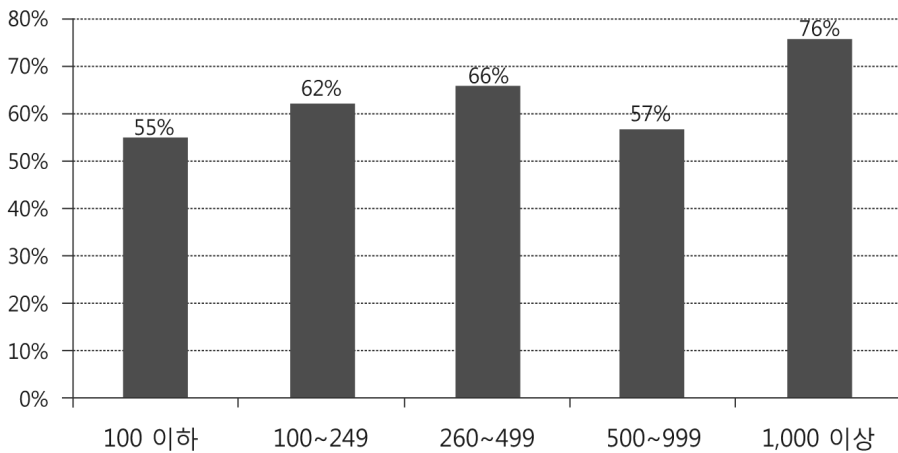
비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득 수준별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측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재무설계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계층에서도 재무설계서비스 이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IV-23〉 미국의 연령별 재무설계서비스 이용률



주: 은퇴 이전자(Pre-retirees)를 대상으로 함.
 자료: LIMRA(2009).

〈그림 IV-24〉 미국의 소득별 재무설계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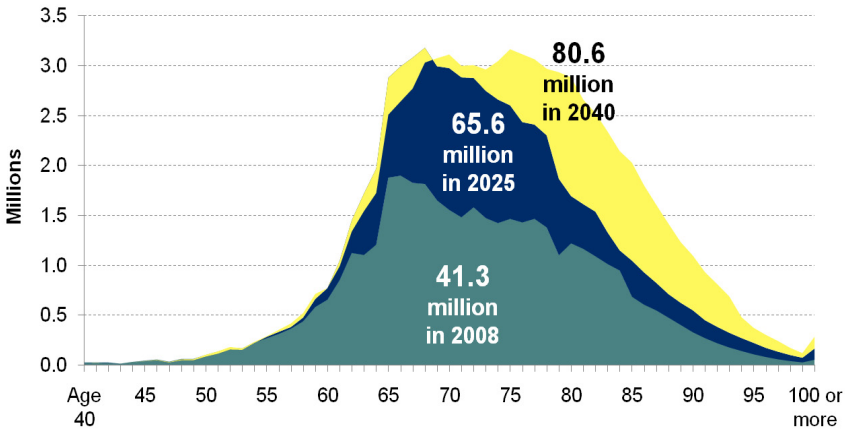


주: 은퇴 이전자(Pre-retirees)를 대상으로 함.
 자료: LIMRA(2009).

IRA시장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IRA시장의 잠재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IRA 고객들에 대한 영업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은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수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IRA의 자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25〉 미국 은퇴자 추계

(단위: 100만 명)



자료: LIMRA(2009.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신시장이었으나, 현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특히 IRA로 사업대상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IRA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영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

첫째,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능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둘째, IRA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연구 및 분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IRA 시장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퇴직연금 사업자

들은 특정 고객에 대한 특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순수한 IRA 가입자보다는 이직자 및 퇴직자들 중심의 퇴직급여 이전에 대해 영업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에는 경제위기에도 은퇴자산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상품 및 자산운용 전략을 적극 개발하고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고객들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후적인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4. 특징 및 시사점

가. 운영제도적 측면

개인형 퇴직연금의 운영체계 등을 선진국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인식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개인과 기업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이 적극 이루어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IRA 제도의 개발과 도입을 통해 가입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부합한 노후소득 대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사례 등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계층별, 사업장형태별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IRA 도입을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퇴직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IRA, 다른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한 IRA,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IRA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IRA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IRA 제도의 유연성과 강제성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IRA 제도의 유용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이전제도 등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도구임을 인지하고 국가차원에서 IRA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IRA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IRA 제도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함부로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중도인출에 대해 무거운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연금재원의 소진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넷째,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기보다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을 적절히 부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자조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같이 직업별로, 저소득자, 고소득자 등과 같이 소득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세제혜택, 낮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한다.

다섯째, IRA 자산운용 추이가 점진적으로 원리금 보장형태 중심에서 실적배당 형태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미국의 IRA 자산운용 상황, 일본·독일의 금융권별 가입건수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리금 보장형태를 띠고 있는 보험상품 및 예저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실적배당형 성격을 지니고 있는 투자신탁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IRA 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실적배당형상품의 개발 필요성과 운용능력 제고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등 선

진국에서 개인퇴직계좌시장이 정착되고 성장된 데에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더불어 사업자의 고령화리스크 관리자 역할과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운영전략적 측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사업자 특히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운영전략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회사는 은퇴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노후소득 외에 건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장성보험 즉, 장기간병보험과 연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IRA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소득보장에 노후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개발과 상품경쟁력을 제고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미국보험회사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무설계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재무설계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니즈가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금융위기에 따른 노후소득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사이클형 맞춤형 운용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 지식이 근로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속성을 고려한 라이프사이클형 운용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보험회사들은 순수한 IRA 가입자보다는 이직자 및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IRA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보다 중간정산 및 이직자,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여 퇴직자산이 은퇴자산화 하도록 즉 Rollover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